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7-09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16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홍천군수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7,697,350원, 가산세 116,871,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6,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¹⁾

이유

1) 원고는 취득세 324,568,640원과 농어촌특별세 32,456,8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주문 기재와 같이 취득세 207,697,350원, 가산세 116,871,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456,85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6.경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6. 2.경 설립된 비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5,000 원,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중 9,000주를 보유하던 C, 1,000주를 보유하던 D과 각각 위 각 보유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부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 취득일 당시 위 회사가 보유한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07,697,350원, 가산세 116,871,290원, 농어촌특별세 32,456,8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주주였던 C, D이 원고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06. 7. 28.경 주식회사 HK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138억 원을 대출받고, C, D은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위 각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처분권한이 없는 C, D이 한 처분행위로서 무효여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위 회사의 주주권은 위 각 은행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한 일부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코람코자산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인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5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그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어 그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의 범위 안에서는 그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 비율만큼 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규정인바, 그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구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강원 홍천군 E 일대에 골프장 건설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7. 28. HK상호저축은행, 영풍상호저축은행, 부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8억 원의 PF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C과 D은 2006. 7. 28.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각 주식을 위 각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표기하였다.

- 담보권설정자(C, D을 말한다, 이하 같음)는 양도담보권자(HK상호저축은행, 영풍상호저축은행, 부민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각 보유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다.



- 담보권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물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담보권설정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자체 없이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담보권자의 상호, 주소와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주식수를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부기한 후, 주주명부의 사본 및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대출실행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에 따른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그에 미친다.
- 담보권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의결권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 행사를 위임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양도담보권자인 HK상호저축은행은 2008. 10.경 대출금 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와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C, D에게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26.경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건설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C,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회사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12. 11.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HK상호저축은행과 부민상호저축은행이 2010. 6. 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전하였다.

5) 영풍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더블유저축은행은 2011. 6. 13.경 이 사건 회사



에 대하여 C, D이 양도담보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과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문제 삼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2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더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G는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 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설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HK상호저축은행, 영풍상호 저축은행, 부민상호저축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7. 28. C, D과 위 회사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내용을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점, ② C, D과 위 각 은행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에 따르면 C, D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담보권자인 위 각 은행에 귀속하는데(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등 참조), 위 주식양도담보권 설정계약에 의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7-09

위 각 은행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데다가 실제로 영풍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더블유저축은행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및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을 문제삼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다시 선임하는 내용으로 의결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0년경 피고에게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신청을 제기하고, 위 신청이 반려되자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집행을 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이희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4-07-09

판사 이소진



관 계 법 형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